



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

- 건물 -

고유번호 1301-1996-104747



[건물]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6

【 표 제 부 】 (건물의 표시)				
표시번호	접 수	소재지번, 건물명칭 및 번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 (전 1)	1995년7월14일	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6	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148.83㎡ 2층 108.81㎡ 3층 108.81㎡	
			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07월 06일 전산이기
2		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6 [도로명주소]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29	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148.83㎡ 2층 108.81㎡ 3층 108.81㎡	도로명주소 2012년8월27일 등기

【 갑 구 】 (소유권에 관한 사항)				
순위번호	등 기 목 적	접 수	등 기 원 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 (전 1)	소유권보존	1995년7월14일 제49851호		소유자 이도영 640620-*****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6
2 (전 2)	가등기할지분2분의1 소유권이전청구권가 등기	1995년7월14일 제49852호	1995년7월7일 매매예약	권리자 이도정 591126-*****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6
			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번 내지 2번 등기를 1999년 07월 06일 전산이기

[건물]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6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	소유권이전	1999년11월30일 제153033호	1999년10월10일 매매	소유자 이도정 591126-*****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6
3	1번이도영지분전부 이전청구권가등기	2012년7월16일 제20174호	2012년7월10일 매매예약	가등기권자 지분 2분의 1 이원평 891122-*****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29 (정자동)
4	가압류	2012년7월27일 제21304호	2012년7월27일 수원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(201 2즈단256)	청구금액 금150,000,000 원 채권자 오선숙 690328-*****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29 (정자동)
4-1	4번가압류경정	2012년8월10일 제22737호	2012년7월27일 경정결정	목적 1번이도영지분가압류
5	3번가등기말소	2013년8월30일 제30219호	2013년8월29일 해제	
6	4번가압류등기말소	2013년10월30일 제37699호	2013년10월22일 해제	
7	2번이도정지분강제 경매개시결정	2025년2월14일 제337788호	2025년2월14일 수원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 정(2025타경543 48)	채권자 최옥분 640320-*****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87, 507호(영통동, 다모아프라자)

【 을 구 】 (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)

기록사항 없음

-- 이 하 여 백 --

관할등기소 수원지방법원 등기국

*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.

* 기록사항 없는 gaps, 을구는 '기록사항 없음' 으로 표시함.

*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.

*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.

주요 등기사항 요약 (참고용)

[주의 사항]

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고유번호 1301-1996-104747

[건물]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6

1. 소유지분현황 (갑구)

등기명의인	(주민)등록번호	최종지분	주 소	순위번호
이도영 (공유자)	640620-*****	2분의 1	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6	1
이도정 (공유자)	591126-*****	2분의 1	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6	2

2.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(갑구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정보	주요등기사항	대상소유자
7	강제경매개시결정	2025년2월14일 제337788호	채권자 최옥분	이도정

3. (근)저당권 및 전세권 등 (을구)

- 기록사항 없음

[참 고 사 항]

- 가. 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.
- 나. 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,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.
- 다. 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.
- 라. 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'확인불가' 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